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 이행보증금 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○군

내 용

「지하수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·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,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도, 토지를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다만,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) 및 원상복구계획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·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.

○○군은 2018. 3월 현재 3,849개의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.

○○군 ○○○○과는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려는 자가 「지하수법」 제14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·이용 공사시작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아래 [표]과 같이 지하수개발·이용 신고 후 공사시작 최대 유예기간 (신고 3개월 이내)을 초과하여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35개의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이 있다.

○○군 ○○○○과는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35개의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.

[표] ○○군 지하수개발·이용 이행보증금 미예치 시설 현황

연 번	신고번호	지하수용도	계획취수량	응용여부	신고일	유예기간 (3개월 반영)
1	0000000000	생활용수	1톤/일	응용	2014-07-02	2014-10-02
2	0000000000	생활용수	2톤/일	응용	2014-10-08	2015-01-08
3	0000000000	생활용수	10톤/일	응용	2015-08-28	2015-11-28
4	0000000000	생활용수	30톤/일	비응용	2016-02-05	2016-05-05
5	0000000000	생활용수	20톤/일	응용	2016-07-21	2016-10-21
6	0000000000	생활용수	20톤/일	응용	2016-07-26	2016-10-26
7	0000000000	공업용수	5톤/일	비응용	2016-09-08	2016-12-08
8	0000000000	생활용수	2톤/일	응용	2016-10-25	2017-01-25
9	0000000000	생활용수	20톤/일	비응용	2016-11-22	2017-02-22
10	0000000000	생활용수	2톤/일	응용	2016-12-14	2017-03-14
11	0000000000	농업용수	15톤/일	비응용	2016-12-14	2017-03-14
12	0000000000	생활용수	29톤/일	비응용	2017-04-19	2017-07-19
13	0000000000	생활용수	20톤/일	응용	2017-05-25	2017-08-25
14	0000000000	농업용수	20톤/일	비응용	2017-06-09	2017-09-09
15	0000000000	생활용수	30톤/일	비응용	2017-06-16	2017-09-16
16	0000000000	농업용수	5톤/일	비응용	2017-06-22	2017-09-22
17	0000000000	생활용수	20톤/일	응용	2017-06-23	2017-09-23
18	0000000000	생활용수	2톤/일	응용	2017-06-23	2017-09-23

연 번	신고번호	지하수용도	계획취수량	응용여부	신고일	유예기간 (3개월 반영)
19	0000000000	생활용수	2톤/일	비응용	2017-06-23	2017-09-23
20	0000000000	생활용수	10톤/일	응용	2017-07-21	2017-10-21
21	0000000000	생활용수	2톤/일	응용	2017-08-01	2017-11-01
22	0000000000	생활용수	10톤/일	응용	2017-08-03	2017-11-03
23	0000000000	농업용수	100톤/일	비응용	2017-08-03	2017-11-03
24	0000000000	농업용수	5톤/일	비응용	2017-08-03	2017-11-03
25	0000000000	생활용수	30톤/일	응용	2017-08-28	2017-11-28
26	0000000000	생활용수	25톤/일	비응용	2017-08-29	2017-11-29
27	0000000000	생활용수	20톤/일	응용	2017-09-05	2017-12-05
28	0000000000	농업용수	20톤/일	비응용	2017-09-05	2017-12-05
29	0000000000	농업용수	77톤/일	비응용	2017-09-06	2017-12-06
30	0000000000	농업용수	3톤/일	비응용	2017-09-11	2017-12-11
31	0000000000	농업용수	50톤/일	비응용	2017-09-19	2017-12-19
32	0000000000	생활용수	29톤/일	응용	2017-09-20	2017-12-20
33	0000000000	생활용수	3톤/일	응용	2017-09-28	2017-12-28
34	0000000000	농업용수	3톤/일	비응용	2017-10-16	2018-01-16
35	0000000000	생활용수	20톤/일	응용	2017-10-25	2018-01-25

※ 울산광역시 ○○군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○○군수는

[시정]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하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